

#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

##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?...

- ▶ 변경이 있을 경우 낚시어선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
  - 어선의 명칭, 총톤수, 승객수, 선적항, 계선장소, 선원의 주소·성명 등
- ▶ 다음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
  - 낚시어선의 매도 또는 임대한 경우와 침몰되어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
  - 6월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와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

## 낚시어선의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기준은?...

- 구명동의 : 최대승선인원의 120% 이상(이 중 20% 이상은 어린이용)
- 구명부환 : 최대승선인원의 30% 이상
- 구명줄 : 지름 10mm 이상, 길이 30m이상 1개,
- 통신기기 :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
- 소화기 : 총톤수 5톤 미만 :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 
총톤수 5톤 이상 :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
- 구급약품 :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
- 쓰레기 봉투(용기) : 50ℓ이상
- ※ 기타사항 : 자기전화등 1개 이상, 핸드레일,  
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

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의무 사항은?...

- 약물중독, 음주상태에서의 어선 조종 금지
- 승객의 구명동의 착용지시, ○ 정원초과 승선 금지
- 출입항신고와 낚시어선에 승객명부의 사본 비치
-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
-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
-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사항

## 과태료 처분 기준은?...

-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등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☞ 구명조끼 미지시, 승선인원 초과,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승선.
- 동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
  - ☞ 선장이 지시했으나 승객이 구명조끼 착용을 거부할시 승객에게 과태료 처분
-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- 이외 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”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
- ▶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1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